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우식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
2023. 3. 16. (목)

범죄를 눈감아 주고,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수수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(제11조 제1항)
- ☑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,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

- 대구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조용우)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A가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공급한 B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한편, B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가짜 명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고, 그 대가로 2,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여, 경찰관 A를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, B를 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A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 조회를 통해 범죄수익금이 들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(노숙자) E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B에게 알려주었고, B는 노숙자 E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인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포통장에서 범죄수익금 5,772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음
- 범죄수익을 보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범행을 눈감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, 범죄수익금 인출까지 도와주고 대가를 수수한 사건으로, 경찰 인지 수사 과정에서의 자의적인 불입건, 범죄 은폐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
- 검찰은 A의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임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A (40세, 대구경찰청 ○○파출소 경위, 前 사이버수사대)

- '19. 2.경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'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'하는 업자(C, D)들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사(피해자 22,858명, 피해액 26억 원)*하던 중, 대포통장 공급업자 B가 C, D에게 노숙자 E 명의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의 사기방조,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입건하지 않음 **[직무유기]**

※ '19. 4. 18. '경찰, 26억원 어치 짝퉁 명품 판매 조직 5명 검거' 등 언론보도

- B로부터 '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 E를 찾아 달라'는 청탁을 받고,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에서 E의 주민조회를 통해 E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B에게 누설 **[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위반]**
- '20. 1. 6. 위와 같이 B에게 E의 거주지 정보를 누설하여 B가 E와 함께 범죄 수익금 57,727,262원을 인출하는 횡령 범행을 도와주고, A는 그 대가로 B로부터 2,000만 원을 수수 **[횡령방조, 뇌물수수]**

● B (42세, 대포통장 유통업자)

- '20. 1. 6. A가 알려준 거주지로 E를 찾아가 E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고, 은행에서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C, D 소유의 범죄수익금 57,727,262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고, A에게 2,000만 원을 공여 **[횡령, 뇌물공여]**
- 인터넷 가짜 명품 판매업자들이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유령법인 3개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포통장을 공급하여, 이들이 '17. 12. 31.부터 '19. 4.경까지 피해자 22,858명에게 26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하도록 방조 **[사기방조]**

II

사건 진행 경과

- '22. 12. 28. 인터넷 FX 해외 선물사이트 사기 사건 구속 송치
※ 선물사이트 구속사건 수사과정에서 '경찰 수사무마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'는 진술 확보
- '23. 1. 18. 대구지방경찰청 및 A 주거지 등 압수수색
- '23. 2. 수사무마 명목 금품수수 브로커 2명 구속기소
- '23. 2.~3. 계좌추적, 통신내역 확인, FIU 자료, 관련기록 검토
- '23. 3. 초 수사무마 의혹 사건 수사 중 A의 뇌물수수 혐의 포착
- '23. 3. 10. A 체포(체포영장), 구속영장 발부
- '23. 3. 16. A 구속 기소, B 불구속 기소

III

수사 의의

- **암장될 수 있었던 뇌물사건의 전모를 규명**
 - '인터넷 FX 해외 선물사이트'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들이 A에게 다액의 금품을 전달하여 위 해외 선물사이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진술과 편지 등이 있었으나,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
 - 검찰은 위 선물사이트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에 대한 본건 뇌물혐의 포착, 관련자 조사, 계좌 내역 확인, KICS 조회내역, 관련 기록 검토 등 다양한 수사를 통해 A의 숨겨진 비리행위를 적발함
 -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인과 결탁하여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그 일부를 뇌물로 수수하는 등 수사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, 묵묵히 일하는 동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킨 부패사범을 엄단함

● **경찰 비호 하에 은폐되고, 반복된 대포통장 공급자 B의 범죄 적발**

- 경찰관 A는 인터넷 가짜 명품 판매 사건 수사 과정에서 B가 대포통장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를 조사하였음에도 B의 조사 사실 등을 기록에 남기지 않은 채 입건하지도 않았으나, 검찰의 이번 수사를 통해 B를 C, D의 거액 사기 범행을 도운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방조로 인지, 기소하였음

※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A가 당시 입건하지 않아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할 수 없음

- 경찰관 A가 B를 입건하지 않아 B는 그후로도 계속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고, 이로 인해 막을 수 있었던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

※ B는 '20. 1.에도 2억 4,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공급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주경찰서에서 수사중지(지명통보)된 상태임

IV **향후 계획**

- 검찰은 경찰관 A의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추가수사 중에 있는바,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처할 것임☑